

접촉금지, 특별교육, 봉사활동 명령 처분 취소의 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20구합○○○○○ [1심]	사건유형	학교폭력
원고	□□□ 외1	피고	△△△△△△학교장
판결선고일	[1심]2020. 10. 15. 원고패	비고	
사건개요	<p>○ 피고는 2018. 12. 5. △△초 3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하여 2019. 1. 3. 원고들과 소외 ○○○ 각 피해학생인 동시에 가해학생으로 판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서면사과 조치를 함. 위 결과에 대하여 소외 ○○○의 아버지는 2019. 1. 21. 원고들 및 김□□에게 더 중한 처분을 하여달라는 취지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, 지역위원회는 원고들에게 '접촉,협박 및 보복행위금지,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,부가적특별교육 4시간'의 추가 조치를 결정함.</p> <p>○ 원고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9. 12. 3. 기각되었고, 피고는 2020. 1. 31. 원고들에 대하여 각 처분을 함.</p> <p>○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절차가 위법하고, 처분사유에 있어서도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으며, 사건 당사자들간 형평성 역시 크게 침해되었기에 위법하므로 취소를 요구하며, 소를 제기함.</p>		
주문	<p>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</p> <p>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</p>		
청구취지	○ 피고가 2020. 1. 31.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.		
판결이유	<p>○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원고들의 부모에게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미리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, 원고들 또는 그 부모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사실과 그 법적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할 것임.</p> <p>○ 재심청구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○○○의 아버지가 제기한 위 재심청구는 피고의 위 2019. 1. 3.자 조치를 받은 2019. 1. 4.로부터 15일 이내에 한 것으로 볼 수 있음.</p> <p>○ 재량권 일탈·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관련 학생 사이의 형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.</p>		
결론	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		